

행복한 국민, 건강한 대한민국, 든든한 국민건강보험



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'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' 변경사항 안내

1. 평소 건강보험 업무에 큰 도움을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 근거
 - 가. 보건복지부 고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제5조 및 제7조
 - 나.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의료비지원실 2023-제4호(2023. 3. 31.) 「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」 공고'
3. '중증 아토피성 피부염' 산정특례 등록기준의 경과 기간 만료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변경사항
 - 대상 질환: 중증 아토피성피부염(상병코드 L20.85, 01, 특정기호 V308)
 - 내용: 청소년 및 소아 등록기준 경과규정 삭제
 - 제도개선일(2023. 4. 1.)로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 경과규정 기간 만료
 - 나. 시행일: 2023. 10. 1.
 - 다. 세부등록기준: '붙임' 참고

※ 변경 후 등록기준('붙임' 파일)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(뉴스·소식/공지사항) 및 요양기관정보마당(공지사항)에 게시할 예정임

붙임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1부('23.10.1.기준). 끝.

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피부과학회장,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장, 대한천식
알레르기학회장

대리 윤상아

팀장

송지원

부장

9/20
전결
이경원

협조자

시행 산정특례운영부-1261 (2023.9.20.) 접수 ()
우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, 21층 (국민건강보험) / <http://www.nhis.or.kr>
전화 033-736-4648 전송 033-749-9616 / 180413@nhis.or.kr / 공개